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513953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22. 11. 29.

판결 선고 2022. 12.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716,246원 및 그 중 172,337,582원에 대하여 2022. 4. 18.부터 2022. 7. 30.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C 사이에 2021. 12.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가 D은행(이하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가, 그 후 보증기한을 변경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장래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7. 3. 20.	1억 8,000만 원	2018. 3. 19. (2022. 3. 18.)	일반자금대출	2017. 3. 21.	2억 원	B
--------------	-------------	-----------------------------	--------	--------------	------	---

2) 소외 은행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7. 3.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일반자금대출과목으로 대출금 2억 원을, 변제기 2018. 3. 19.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 대출하였다가, 보증기한의 변경으로 변제기를 2022. 3. 18.로 변경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21. 12. 16.부터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4. 18. 소외 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연체 대출원리금 172,337,582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4)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보증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인 2022. 3. 19.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22. 4. 17.까지 30일간의 미이행금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연 2.2%의 율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307,390원(= 170,000,000원 × 22/1000 × 30/365, 원 이하 버림)이다.

5)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위 구상채권보전을 위해 피고 회사, B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합계 1,071,274원을 지출하였다.

6)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 B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율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이행일인 2022. 4. 18.부터 연 8%이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 B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하였고, 이러한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E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및 피고 회사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21. 12. 16. 원고의 보증으로 받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2021. 12. 30. 최종 부실처리되었다.

3) 피고 B은 2007. 4. 30.부터 소유해오고 있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0. 피고 C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1. 피고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12323호로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의 시가가 최소 2억 1,000만 원이었는데, 피고 C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160,8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49,200,000원의 가치가 있었다.

다. 부동산강제경매 및 피고 C 앞으로의 배당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은 2022. 2. 10. 인천지방법원 F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매각되었고, 2022. 10. 4.의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피고 C 앞으로 85,584,834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상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민사소송법 제150조(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서)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위 대위변제금 172,337,582원, 미수위약금 307,390원, 채권보전비용 1,071,274원, 합계 173,716,24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72,337,58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2. 4.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22. 7. 30.까지는 원고 소정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1)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앞서 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피고 B의 2021. 12.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21. 12.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피고 C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C 사이에 2021. 12.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C이 피고 B의 사해행위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미 말소되었고, 갑 제9호증(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배당금이 원고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이 법원 2022카단819050)으로 인하여 피고 C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배당금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배당금지급청구채권 전액을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결국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해근

별지